

표준약관 개정 신·구조문대비표

[핀뱅킹자동이체서비스이용약관]

현 행	개 정(안)
<p>제15조(약관의 변경) ① 상호저축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변경내용을 게시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. 다만,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(최소 1개월이상)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② 제1항의 약관변경 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제1항의 게시 외에 상호저축은행은 서면·전자우편 등 이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개월 전까지(제1항 단서의 경우 즉시)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. 다만, 기존 이용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이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</p> <p>③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“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</p>	<p>제15조(약관의 변경) ①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,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29조를 준용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삭 제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삭 제></p>

현 행	개 정(안)
<p><u>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의 또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</u>”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게시 또는 통지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④ <u>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(제3항의 게시·통지내용 포함)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용자의 이의 또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상호저축은행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</u></p> <p>⑤ <u>상호저축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약관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.</u></p>	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